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노무현 인

2007년11월13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 행정자치부장 박명재

●대통령령 제20372호

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개정령

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행정절차법시행령”을 “행정절차법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·제6호·제7호·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「병역법」, 「향토예비군설치법」, 「민방위기본법」,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에 따른 징집·소집·동원·훈련에 관한 사항
- 6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,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·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
- 7. 「국가배상법」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결·결정에 관한 사항
- 10. 「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행하는 사항
- 11. 「특허법」, 「실용신안법」, 「디자인보호법」, 「상표법」에 따른 사정·결정·심결,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사항

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전자공청회의 개최 통지 등) 행정청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(이하 “전자공청회”라 한다)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전자공청회 개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, 관보·공보·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.

- 1. 제목
- 2. 실시기간 및 전자공청회를 개최하는 인터넷 주소(이하 “전자공청회주소”라 한다)
- 3. 주요내용

4. 그 밖에 전자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제20조의3(전자공청회 의제 등의 게시) ① 전자공청회를 개최하는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해당 전자공청회주소에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해당 전자공청회주소에 게시할 수 있다.

제21조 중 “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2조(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알림) ① 행정청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.

② 행정청은 전자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해당 전자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5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전자공청회 운영 지원)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공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 전자공청회주소를 마련하여 행정청에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자공청회 개최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의2·제20조의3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최되는 공청회 또는 전자공청회부터 적용한다.

◇행정절차법시행령 개정이유

「행정절차법」의 개정(법률 제8451호, 2007. 5. 17. 공포, 2007. 11. 18. 시행)으로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정책결정을 위하여 전자공청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자공청회의 실시 방법·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자공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◇주요내용

가. 전자공청회 실시방법 등(영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)

행정청이 전자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전자공청회의 제목·실시기간·주요내용 등을 미리 알려주도록 하고, 전자공청회를 개최하는 인터넷주소에도 같은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 일반 국민들이 전자공청회를 통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함.

나.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통지(영 제22조)

공청회 또는 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고 일반 국민들이 보다 활발하게 국민의견 수렴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.

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노무현 인

2007년11월13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
행정자치부장 박명재

●대통령령 제20373호

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

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”을 “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법”을 “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·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
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4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)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